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02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021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24 선고 2018가소21504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윤선영

변론 종결 2020. 10. 22

판결선 고 2020. 12. 10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24. 선고 2018가소215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부터 조립식 판넬 및 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판 넬을 구입하는 등 피고와 물품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4. 23. 피고로부터 합계금액 8,836,664원의 물품견적서 2장(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8. 4. 25. 피고에게 합계 9,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물품에 관하 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60만 원의 외상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이 사건 물품대금이 위 외상대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밝히며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 된 물품의 공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물품공 급계약은 원상회복으로서 위 물품대금 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 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이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에 충당되었다 거나 외상대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 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를 교부받고 나서 이틀 후에 곧바로 그 견적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의 거래원장에도 이 사건 물품대금이 견적에 따른 수금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물품에 관한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받았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 따라 2017. 2.부터 2017. 12.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9,156,813원의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과 대 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156,813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판사 양시호판사 안현진